

(붙임1)

「한국은행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 주요 개정 내용

I 개정 필요성

-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대상을 알아보기 쉽게 보다 간소·명료화하는 방향으로 변경
 - 강원본부 전략·특별·일반지원의 세부 선정기준을 2개 축소* (15개 → 13개)
 - * 지역특화산업(A7) 및 기타지원기업(A15)
 - 세부 선정기준 내에 전략지원부문과 일반지원부문이 혼재되지 않도록 정비*
 - * 추천기업(A6), 전입기업(A9), 기타지원기업(A15)
- 「2021년 강원도 지역산업진흥계획」에 따른 강원도 주력산업 개편을 운용기준에 반영

II 주요 개정 내용

1.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(A8)에 「2021년 강원도 지역산업진흥계획」의 강원도 주력산업을 반영
 - 강원지역 주력산업 및 업종코드를 별도의 표로 보기 쉽게 변경

2.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(A8)에 주요 유관기관 선정기업을 추가

- 강원도청 선정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,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및 강원도청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 중 상법상 회사,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획득업체를 지역전략산업(A8)에 추가
- 강원도청,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추천기업의 지원부문을 기존 추천기업(A6)에서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(A8)으로 변경

3.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하 농어업법인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 전략지원대상으로 지원

- 기존 지역특화산업(A7, 일반지원부문)에 있던 농림어업(KSIC:01~03)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농어업법인을 농림수산업 관련기업(A13, 전략지원부문)에 포함하여 농어업법인은 업종에 관계없이 전략지원대상으로 지원

4. 추천기업(A6), 전입기업(A9) 중 전략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(A8)에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일반지원부문으로 통일

- 추천기업(A6)의 일부 항목*을 제외(전략지원부문으로 이관)하고 일반지원부문으로 통일

* ①강원도청 선정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, ②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및 강원도청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중 상법상 회사, ③강원도청·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업은 지역전략산업(A8)으로 옮겨 지원을 강화

- 전입기업(A9)은 입법취지에 맞도록 기존 도내 산업단지 입주가동업체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강원도 전입기업에 대한 지원은 일반지원부문으로 변경

5. 지역특화산업(A7) 및 기타지원기업(A15) 폐지

- 지역특화산업의 일부 항목*은 전략지원부문으로 이관하고 나머지는 폐지

* 강원도 특산물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체는 지역전략산업(A8)으로, 농어업법인은 농림수산업관련기업(A13)으로 옮겨 지원

- 실효성이 낮은 기타지원기업(A15)은 폐지

6. 근거규정 명시 및 개정법 반영

- 일부 선정기준의 근거규정을 명시하고, 관련법 개정을 반영

Ⅲ 시행일자

□ 시행일자: 2022년 1월 1일

- 금융기관 대출은 2022년 1월 1일 취급 시부터, 당행 지원자금은 2022년 3월 배정 시부터 개정 기준을 적용

지원부문별 주요 개정내용

1. 전략지원부문

<개정 전> (총 6개)	<개정 후> (총 3개)	<주요 개정내용>
A5 연구개발우수기업	A5 연구개발우수기업	☞ 현행과 같음
A6 추천기업 중 일부	-	☞ 다음 항목은 지역전략산업(A8) 으로 이관 ① 강원도청 선정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②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및 강원도청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중 상법상 회사 ③ 강원도청,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업 ☞ 나머지 항목은 일반지원부문 으로 변경
A8 지역전략산업	A8 지역전략산업	☞ 강원도 주력산업 및 주요 유관기관 선정기업으로 내용 변경
A9 전입기업 중 일부	-	☞ 강원도내 전입기업을 일반지원대상 으로 변경
A13 농림수산업 관련 기업	A13 농림수산업 관련 기업	☞ 지역특화산업(A7) 에 있던 농어업법인 을 이관받아 업종 제한없이 농어업법인을 지원
A15 기타지원기업중 일부	-	☞ 실효성이 없어 폐지

2. 일반지원부문

<개정 전> (총 11개)	<개정 후> (총 9개)	<주요 개정내용>
A1 창업기업	A1 창업기업	☞ 현행과 같음
A2 벤처기업	A2 벤처기업	☞ 현행과 같음
A3 혁신기업	A3 혁신기업	☞ 개정법 반영
A4 녹색기업	A4 녹색기업	☞ 개정법 반영
A6 추천기업 중 일부	A6 추천기업	☞ 다음 항목을 일반지원부문에 포함 -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, 강원정보문화진흥원,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가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업
A7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	-	☞ 일부 항목은 다음과 같이 이관 ① 지역전략산업(A8) 으로 이관 강원도 특산물 이용한 제품 제조·판매업체 → '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획득업체'로 변경하여 이관 ② 농림수산업관련기업(A13) 으로 이관 농림어업(KSIC 01~03)이외의 업종 영위 농어업법인
A9 전입기업 중 일부	A9 전입기업	☞ 도내 산업단지 입주공동업체 를 지원대상에서 제외
A10 수출관련기업	A10 수출관련기업	☞ 현행과 같음
A11 소재·부품 생산기업	A11 소재·부품 생산기업	☞ 개정법 반영
A14 명절 및 재해자금	A14 명절 및 재해자금	☞ 현행과 같음
A15 기타지원기업중 일부	-	☞ 실효성이 없어 폐지